



## 한국계 Maquiladora 를 위한 Executive Summary<sup>1</sup>

on August 5, 2005

### 2005 년 멕시코 세법개정

2005 년 세법 개정은 과거와는 달리 지난해 11 월부터 금년 6 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소폭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멕시코 로컬기업들의 조세부담에 중요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한국계 마킬라도라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 마킬라도라나 PITEX program 으로 운영되는 한국계기업에게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sup>2</sup> 다음은 개정내용중 참고가 될 사항만을 정리하였습니다.

- (1) 2005 년 세율: 30% - 2004 년 개정때 예고한 32%에서 2% 추가 조정 (2006 년: 29%, 2005 년: 28%)
- (2) 과거에는 매출 총이익계산시 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년중 매입액을 전액 공제했으나 2005 년(2004 년은 Option 선택에 의해 가능)부터는 회계원칙에 의해 계산된 연말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없다.- 재고자산이 미국소유인 대부분의 마킬라도라는 영향이 없음.
- (3)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규정을 도입, 차입금과 자본금 비율이 3:1 을 초과하게 되면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차입금을 이해관계 없는 제 3 자로 부터 얻은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서 많은 시비가 있지만 이자비용을 멕시코에서 지급하지 않는 대부분의 마킬라도라는 영향이 없음
- (4) 부가가치세(IVA tax) 계상방식과 처리기간이 대폭개선되었으며 25 일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 - 과거에는 40 일이내 심사 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정상 일부만 환급해주고 나머지는 미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정세법은 이를 금지하였습
- (5) 멕시코내에서 발생하였으나 국경밖에서 사용된 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 (0%) - 통신관련 서비스가 대부분 해당되지만 일부 전문가 용역비도 해당될 수 있음.
- (6)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액에 해당되는 보증서(Bond) 예치 규정 폐지
- (7) 세무당국의 감사기간 중이라도 납세자는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첫번 위반자에게는 최소한의 벌금을 부과한다.- 과거에는 일단 감사가 시작되면 자진 수정신고가 불가능하여 미납분에 대하여 최고 100%의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었음

<sup>1</sup> 본 Summary 는 Choi, Kim & Park, LLP (CKP 회계법인)이 한국계 마킬라도라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한 것이며 이는 저희의 법률적인 해석이거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므로 중대한 의사 결정 시에는 각자 전문가의 적절한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sup>2</sup> 멕시코 당국에서는 2003 년 세법개정 이후 가능한 한 마킬라도라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 년 이후 약 400 여개의 마킬라도라가 멕시코를 떠났습니다.

## 멕시코 이전가격에 관한 Update

2003년 대폭적인 개정(2003년 8월 Executive Summary 참조)이후 이전가격 정책에 관하여 일체의 공식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2002년에 (일부 2003년도 포함) 제출한 사전가격협의 (APA) 미처리분 약 300 case 를 지난 4월부터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각 마킬라도라에 통보하고 있어서 상당한 case 가 법정으로 갈 전망입니다. 2003년 11월 국제조세국장에 취임한 Mr. Schatan 은 경제학자로서 향후 이전가격감사(Audit)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으로 밀려있는 APA case 를 무리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7%가 넘는 Mark-up 을 요구하고 있는데 동의 하지 않는 마킬라도라는 통보일로부터 45 영업일 이내에 조세법원에 항소하여야 합니다. 만일 실수로 항소기한을 넘겼더라도 Hacienda 로부터 이에 관한 과세조정 고지서가 오면 그때 항소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 이전가격에 관한 규정중 국외의 특수관계자와 거래금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서류 (주로 Transfer Price Study)가 미비할 경우에는 거래전액을 인정치 않는다는 소위 "Death penalty" 규정이 있는데 OECD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기타 멕시코 Update

- (1) 지난 4월 1일부로 멕시코와 일본이 자유무역협정(JAMFTA)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정에는 멕시코에 수입되는 44%의 일본제품에, 일본에 수입되는 91%의 멕시코 제품에 관세가 폐지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 지난 3월 17일에는 PROSEC 에 포함된 많은 품목의 관세율 개정이 있었습니다.
- (3) 2000년 이후 한때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던 멕시코가 지난해에는 3.95% 성장을 보여 본격적인 회복세로, 또한 마킬라도라의 수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 미국 이전가격 Update

한국 본사에서 기계나 원자재등을 수입하는 마킬라도라는 멕시코 이전가격문제 이외에도 미국세청(IRS)과의 이전가격문제가 있는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IRS 와 미세관이 서로의 Data base 를 공유하여 본지사간 가격(이전가격)조작을 적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IRS 의 계산으로는 이전가격조작에 의한 탈루세액이 매년 530억불에 달한다고 하며 최근 2백만불의 용역비를 두명의 대학교수들에게 지불하고 적발시스템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품분류(HS) 코드가 같은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수입품이 미국세관을 통과할 때 그 가격이 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통계자료와 차이가 나면 일단 이전가격조작을 의심하여 자동적으로 IRS 에 보고된다고 합니다.

## 종업원 상해보험

대부분의 한국계 마킬라도라가 근거지를 두고 있는 California 나 Arizona 의 경우에는<sup>3</sup> 고용주가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

<sup>3</sup> Texas 는 의무규정이 아님

하고 있으며 보험을 들고 있지 않다가 산재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최고 \$100,000에 이르는 벌금은 물론 최고 1년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까지 병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없더라도 주 노동국의 불시 감사에서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벌금 \$10,000 plus 종업원당 \$1,000 (Arizona는 \$500)의 벌금과 최고 징역 6개월까지의 형사처벌을 병과할 수 있다고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내에 근무하는 종업원들만 보험회사들이 가입을 받아 주고 또한 미국내에서 일어난 산재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했듯이 현실이었고 주 노동국 단속반들이 국경밖까지 단속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많은 마킬라도라들이 종업원 상해보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적발이나 단속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대형 보험사들이 종업원들이 미국경 밖에서 업무와 관련된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해 주는 “Foreign 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를 개발하여 상품으로 나와 있으며 이미 보험을 가입한 마킬라도라도 여럿 있습니다. 보험요율은 종업원의 직책과 직무에 따라 다르지만 급여액의 대략 2%에서 4%사이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는 미국내 근무 종업원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보험료)입니다.

본 Executive Summary 에 의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Choi, Kim & Park (CKP) 회계법인 (전화 (858)560-5200 이나 Email: hoonkim@ckpcpas.com 으로 알려 주십시오. 끝.